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0. 29 선고 2021나5371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최건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성일, 양경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오승준

변 론 종 결 2021. 10. 1.

판 결 선 고 2021. 10. 29.

제1 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2. 2. 선고 2020가단210536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18. 5. 24. 체결된 보험계약자 변경 계약을 7,552,45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7,552,45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4. 2. 7. C과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과 피고는 1995. 5. 13. 혼인하여 부부 생활을 하다가 2018. 9. 21. 협의이혼하였다.

다. C과 피고는 2018. 5. 24.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를 C에서 피고로 변경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자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내용변경을 신청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를 피고로 변경하였다.

라. 원고는 2010. 1. 14. C과 대출금액 30,000,000원, 약정이율 연 13.3%, 연체이율 연 19%로 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신용대출하였다. 위 대출계약은 매년 연장되어 오다가 2019. 1. 16. 최종적으로 연장되면서 대출 만기일을 2020. 1. 14.로 정하였다.

마. C은 2019. 3. 11.까지 이 사건 대출금 중 원금 10,332,000원과 이자 26,769,008원 합계 37,101,008원을 납입하였으나, 2019. 4. 10.부터 원금과 이자를 납입하지 못하여 2019. 5. 10.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20. 2. 7. 기준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22,503,932원(=원금 19,668,000원 + 이자 2,835,932원)이다.

바. C은 2013. 10. 31.경 F단체의 신용보증 하에 D은행 영암군지부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F단체는 2018. 7. 6.경 C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

사. 또한 C은 2015. 7. 9.경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하에 주식회사 G으로부터 36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8. 7. 12.경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2018. 7. 25. C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 아. 한편 채권자 H조합의 신청에 따라 2018. 8. 1. 광주지방법원 I로 C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7, 9, 17호증, 을 1, 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자 변경계약 당시 이미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성립하여 있었으므로, 비록 이자가 정상적으로 납입되고 있어서 그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C의 무자력

1) 갑 제5, 6, 8, 11 내지 15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법원행정처장 및 E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자 변경계약 당시 C은 전남 화순군 J 토지 등 9개의 건물 및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H조합의 신청에 따라 2018. 8. 1.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산정된 이 사건 부동산들의 감정평가액은 835,805,400원(2018. 8. 24. 기준)이며, 위 임의경매개시결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들에는 아래와 같은 근저당권 설정 및 가압류 기입등기가 있었다.

종류	등기일자	채권자	채권최고액(원)	청구금액(원)
근저당	2017.12.26.	H조합	546,000,000	
	2018.3.3.	K	60,000,000	
	2018.3.27.	L	600,000,000	
가압류	2018.7.5.	D은행		61,083,657
	2018.7.6.	F단체		244,894,847
	2018.7.19.	기술신용보증기금		225,000,000
	2018.7.25.	신용보증기금		288,000,000
합계			1,206,000,000	818,978,504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들의 근저당권자들이 신고한 채권금액 및 배당액은 아래와 같다.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원)	채권신고액(원)	배당액(원)
H조합	546,000,000	원금 441,981,581 이자 61,130,116	503,111,697
K	60,000,000	원금 50,000,000 이자 13,610,958	60,000,000
L	600,000,000	원금 430,000,000	363,164,621

라) C은 M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1729호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0. 18. ‘M은 C에게 95,00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C은 N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7가단27155호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5. 25. ‘N은 C에게 98,371,2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자 변경계약 당시 C은 채무초과인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보험계약자 변경계약 당시 C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들과 M, N에 대한 각

판결금 채권이 있었다.

② 당시 이 사건 부동산들의 시가는 감정평가액 835,805,400원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최소한 원금 합계 921,981,581원(=441,981,581원 + 50,000,000원 + 430,000,000원)으로 위 시가를 초과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들은 C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었다.

③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 판단에 있어서 채무자의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는데(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11401 판결 참조), C의 M, N에 대한 각 판결금 채권은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④ 설령 C의 M, N에 대한 각 판결금 채권이 적극재산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자 변경계약일인 2018. 5. 24. 기준으로 한 위 각 판결금채권 금액은 M에 대한 127,845,672원, N에 대한 106,254,464원 합계금 234,100,136원(=127,845,672원 + 106,254,464원)인데, 이 사건 부동산들에 기입등기된 가압류의 청구금액이 818,978,504원으로 이를 훨씬 초과한다.

다.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

1) 사해행위 성립

위와 같이 무자력 상태에 있던 C이 이 사건 보험계약자 변경계약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로서의 권리를 피고에게 이전한 행위는 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범위

가) 갑 제4,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만기는 종신, 연금개시/나이는 2025. 2. 7./55세인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자 변경계약일인 2018. 5. 24. 기준 해약환급금은 23,813,311원인 사실, 위 해약환급금 중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된 금액 16,260,857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7,552,45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자 변경계약으로 수익자인 피고가 취득하는 이익은 최소한 당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중 7,552,454원 상당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해약환급금 상당액인 7,552,454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인 이 사건 보험계약자 변경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가액의 배상으로 위 7,552,45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

라.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은 예상금액에 불과할 뿐 실제로 발생한 금원이 아니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지 여부는 C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으며, 위 해지권의 행사는 일신전속권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자 변경계약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에 있어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보험계약자의 재산을 이전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이 사건 보험계약자 변경계약일 뿐이고, 원고가 C을 대신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해지권의 행사가 일신전속권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자 변경계약의 취소가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은 이 사건 보험계약자 변경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일 뿐이므로 실제 해지권 행사로 해약환급금 채권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와 관련이 없다.

③ 만기가 도래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의 보험계약의 재산적 가치는 해지할 경우 그 환급금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고, 후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계약자가 가지는 권리는 위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자 변경계약으로 피고는 최소한 해약환급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다.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자 변경계약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에

같음하기 위한 것이고, 당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를 해하리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자 변경계약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와 피고가 2018. 6. 18.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2018. 9. 21. 협의이혼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자 변경계약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아니라거나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보험계약자 변경계약의 목적이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에 같음하기 위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이 2018년에 들어서서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독촉에 시달리면서 부부싸움이 잦아져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자 변경계약 당시 피고는 C이 채무초과 상태임을 알고 있었다.

다) 또한 피고는, C이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2019. 3. 11.까지 성실하게 납입해 왔고 변제한 원리금 금액이 이 사건 대출금 30,000,000원을 상회한 점, C이 마지막으로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을 납입한 때가 2019. 3. 11.로 이 사건 대출금 만기일인 2020. 1. 14.로부터 약 10개월 정도 남겨둔 때인 점, 이 사건 보험계약자 변경계약일이 이 사건 보험에 관한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무려 24년이 지난 때이고 그 이유가 협의이혼을 신청하기 전에 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으로 같음하기 위한 것인 점, 이 사건 보험계약자 변경계약으로 보험계약자가 재산이 있는 피고로 변경된 것이 오히려 원고에게 이익인 점 등을 보면, C에게 원고를 해하려는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자 변경계약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자신의 계약자로서의 권리를 피고에게 이전함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의 채권에 대한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주문 기재와 같이 판결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황정수, 판사 장성훈, 판사 최수진

별지

목록

순번	증권번호	현재 보험계약자	계약일	계약자변경일	총지급금	상환명
1			1994. 2. 7.	2018. 5. 24.	7,552,454원	

